

교육공학과 대학원 내규 (2019. 9. 9 개정)

제 1 조 (종합시험)

- ① (목적) 석사 및 박사과정은 학생은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학위논문 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 (응시자격) 전공 소정학점 2/3 이상 (석사과정 16학점, 박사과정 24학점)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다.
- ③ (합격기준)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평가한다. 불합격한 과목의 대상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 2 조 (프로포절)

-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원생은 학위논문 심사학기 6개월 전에 프로포절 작성 및 발표를 해야 한다.

제 3 조 (학위논문 심사자격)

- ①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원생은 학위논문 작성 전에 국내 등재지 또는 심사가 있는 외국 학회지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

본 학과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원의 내규를 따른다.